

**제2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Workshop**  
**“한국의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2년 6월 19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 벗들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피난처

“ 매년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본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로서,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을 기하여 ‘아프리카 난민의 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확장하여 기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월드컵 경기로 들떠 있지만 그 어느 한 편에는 박해와 폭력을 피해 떠도는 2천만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곁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희망과 용기를 기리고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진행순서

**【13:30-14:00】** 등록 및 비디오 상영

**【1부 (14:00-15:50)】** 사회: 한택근(변호사)

..인사말..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찬조 발언..

박경서(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James Kovar(UN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소장)

..비디오 상영..

“Don't look back!(뒤돌아보지 말라)”(8분)

..난민과의 대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버마 난민신청인,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신청인

**【15:50-16:00】** 휴식

**【2부 (16:00-17:30)】** 사회: 박찬운(변호사)

..발표 및 토론..

“난민인정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제- 김기연(민변)

토론- 강여경(좋은벗들), 김병주(변호사),

장복희(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이호택(피난처)





## 한국에서 난민으로 지내 온 지난 1년

협약난민 D씨<sup>1)</sup>

먼저 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고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겪은 고통과 박해를 이해하고 저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해준 한국정부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자유로운 삶 즉 박해나 박해에 대한 공포, 고문, 핍박이 없고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삶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Tigray족 혹은 Wayanee족을 제외한 에디오피아의 제 동포들, 특히 제 종족인 Oromo족과 남부의 Amara족을 포함한 모든 에디오피아인들은 지금도 박해, 박해에 대한 공포, 고문,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국을 탈출합니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에 재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민신청자들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 난민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를 포함한 Oromo족을 학살하고 고문, 핍박하는 에디오피아 정부의 탄압을 피해 도망쳐 왔으며, 오직 평화로운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Oromo족 사람들- 학생, 농민, 친구들-은 탄압을 받고 있으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사람이 한 번 친구가 되면 헌신적으로 끝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난민제도에 있어 한국과 외국의 차이

저는 난민신청인이 그 지위를 인정받은 후 재정착하는 과정에 (한국과 외국의 제도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들에게 주거, 무상 교육, 교통비를 제공하고 새로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정부에게 어떤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

1) D씨는 지난 해 2월 한국의 첫 협약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당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D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신상이 언론이 자세히 공개되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는 기쁨보다는 고국의 가족에 대한 걱정과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언론보도 이후 그는 국내에 있는 자국민 출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난민으로 인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언론에의 노출이나 공개적인 자리를 피하고 있다.

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난민신청자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곳에서 왔는지와 관계없이 난민은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탈북자와 저 같은 외국 난민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에 살 수 있는 체류허가를 받았고 매년 연장이 가능한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제 비자는 내년에 다른 비자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제가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탈북자들은 매우 특별한 처우를 제공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과 무상교육이 주어지고 다른 기본적인 필수품도 지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아직까지 상주 주소지조차 없습니다. 제가 탈북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들과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니가요. 그러나 제가 탈북자들이 누리는 만큼의 권리는 부여받지 못 하더라도 약간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살 집이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무상 교육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 힘써주신 한국정부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께 감사 드리며,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제 정신적 지도자로서 저를 도와주고 격려해주신 최종손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the Living God who saved my life and who made all the opportunities for me to escape from my home country. Also I want to thank the Korean Government, which understands my past persecutions, pain I suffered and Life out of freedom, and granted me refugee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my own experience,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having Life in freedom (being without persecution or fear of persecution, oppression, torture, and not being allowed to gather in public or freedom of speech). These are the worst things now happening to my own people who live in Ethiopia, such as my own tribe Oromo, Amara the Southern people, and all those who live in Ethiopia, except the Tigray or the government (E.P.R.D.F.) or Wayanee.

I do know that all asylum seekers flee their home country to save their lives. Priority in their life is to have a peaceful life and to be resettled in any country that allows them to stay. And that is the real aim of asylum seekers.

### **Refugee and Life in Korea**

As I mentioned above I fled Ethiopia, because the government kills, tortures, convicts, and makes all sorts of destruction against the Oromo people and myself. So my aim was to have a peaceful life and better future. I am fortunate to be in Korea, where the real peace is among the people, whereas the Oromo people, students, peasants, and friends are still suffering, sacked out of their jobs and faced with all sorts of destruction against them. I discovered that the Koreans are not well communicated with foreigners. However, if any Korean decides to be a friend, I know that he sacrifices all his energy to help that person.



### Concerning the difference in Asylum System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 do realize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how to resettle refugees after they are recognized. In some European countries, they provide them with a place to stay, free education, free transportation and fund them so that they may be able to start to lead a normal life. I do not have any intention to request any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in special ways. However, I wonder if there is discrimination between refugees since refugees are refugees wherever they came from. In my belief, all of them flee their country to save themselves. If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me? As I explained, I was allowed to live in Korea and issued F-1 visa, which would extend every year according to immigration officer. My visa status will change into another next year. Also the government issued me a travel document so that I may be able to travel within the country. I heard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assisted in a very special way. They are provided home to stay, free education, and other basic needs are met. But I still do not even have a permanent address. I am not saying that I must be equal to North Korean refugees since they are one family and one nation. Even if I do not deserve all the rights they enjoy, however, just a little help is necessary for every refugee who is recognized, such as a place to live in and education for better future.

Once again, I want to thank all government and immigration officers who handled my case, and Rev. Choi Jong-son who encouraged and assisted me as a spiritual leader and father. May God Bless Everyone!



##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힘들어요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신청인 Dide<sup>2)</sup>

우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거의 2년이 되었고, 여기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은 저희들의 것과 너무 다릅니다. 둘째로 -두 번째이지만 첫째만큼 중요한 점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피부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흑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교육과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에 대해서는 집도 옷도 없고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거나 일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해도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이유로 가장 힘든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일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일자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셋째로 음식이 매우 달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는 한국의 돈 많은 교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외국인을 도와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오히려 비기독교인들 보다 저희들을 더 속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을 이용해 후원자를 찾아 돈을 벌면서도 그 돈은 저희를 돕는데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 집세, 의료비, 또는 갖가지 세금을 모두 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며, 심지어는 실제 금액의 두 배를 물기도 합니다. 항의라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흑인 거주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돌려댁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집주인은 목사가 집세를 지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미 보증금을 다 냈는데도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주고, 집과 일자리를 찾게 도와준다는 사람조차도 저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

We are refugees from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t has been almost two years since we lived here, and we are facing a lot of difficulties. First of all, we don't have the same culture and tradition. Second, but not less than the first, it is the skin color. When Koreans see black people coming from

2)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Dide(본인의 동의 하에 실명을 밝힘)는 2000년 10월 남편과 함께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 8개월이나 지났지만 법무부에서는 아직 어떠한 연락도 없어 매일매일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ide는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국적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가 되어버렸다. 아기에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Dide는 아기에겐 '힘'이라는 한글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the U.S. and Europe, they are considered educated and living in houses, wearing clothes. But as for black people living down there in Africa, we don't have all that. They think we cannot even think by ourselves, and we cannot do something right, unless they are behind us controlling everything. They give you the toughest part of the job to do because you are from Africa. We work like labour animals. For some jobs, they do not even want to hire you because you are black. They will not help you because you are not like a human being who has rights. Thirdly, the food is very different from ours. And the fourth point is concerning millionaire churches here in Korea. Those churches that are supposed to help foreigners, but behind Christianity, they are cheating on us even more than non-believers of Christianity. They are making money behind our backs by looking for sponsors to support their churches with our names, by saying that they are providing everything for us (food, rents, medical care, bills). But in reality, we are the ones who are paying for everything, even double the worth. And if you protest, he will tell you that it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who does not want black people around. But if you verify by yourself, the owner will tell you that he does not even ask for deposit money because the pastor told him that he is providing for everything. But you know that you already paid a big amount of deposit. You can see how Koreans are making us suffer. Also if you get a job, they will pay you less than others, and the person who helps you find houses and jobs are also cheating on you.

기리는 박수걸어서 반인성경까지도 불도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로 가라. 저런 교회로 가라.

어떤 생물은 큰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 않는다. 강물에서. 먹거나 자는 걸 구할 때도, 열자리를 구할 때도 어렵다.

우리를 도와주라고 해놓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우리는 압도 될 주리. 두레 김세보다도 더 받고.

난 아기가 있어요. 아기는 가져가 줘야 필요하다. 우리 흑인 맞다. 우리 배부라도 좋으려면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성할 사람처럼

전쟁 등 어떤 수 없는 유근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여기서도 또 고등을 받는다.





##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그 날까지

버마 난민신청인 Nay Tun Naing<sup>3)</sup>

제2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우리의 난민지위에 관해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198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 랭군 대학의 심리학과에 입학하였고, 87년과 88년 초 랭군대학에서 이런저런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88년 6월 버마 정부가 휴교령을 내렸을 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현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운동의 하나인 1988년 민주항쟁 때에는 Einme라는 곳에서 평화 시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든 버마 국민들은 일당 독재체제 폐지와 다당 민주주의 도입을 요구했으며 역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민주항쟁 때 Eime 학생연합 의장과 Eime 시위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88년 9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45일간 마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Eime에는 저 말고도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구금된 것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저는 자유사회민주당(DPNS)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대학에 다시 복학할 때까지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비밀경찰들은 언제나 저의 활동을 감시했으며 학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지 말도록 종종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버마는 총성만 없었을 뿐, 인권유린이 매일매일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전투장과 같았습니다. 기본권과 민중의 권리가 매일매일 짓밟히는 그런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1993년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부모님과 저의 미래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정치적 신념을 잘 알고 있기에, 감옥에서 평생을 사느니 해외로 가는 것을 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과 광주항쟁의 역사는 한국이 저에게 있어 가장 잘 맞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버마 군부는 젊은 운동가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의 출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는 1994년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를 조직해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1988년 말부터 NLD 본부는 저희를 지도하고 지령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지부를 설치하자마자 저희는 서울대 학생연합과 나와우리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부친 이주노동자의 집 역시 저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술한 집회를 열었으며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 단체들을 통해 버마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등의 일을 해 왔습니다. 또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아태민주지도자포럼(FDL-AP)에서 주최한 “버마와 동티모르의 민주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회의와 1999년 서울국제NGO대회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집회를 열 때마다 미얀마 대사

3) 버마에서 온 Nay Tun Naing(본인의 동의 하에 실명을 밝힘)은 2000년 5월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 직원들은 이를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어 군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비자가 만기되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만일 출입국관리국이나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버마로 강제 송환되었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인 Thet Win Aung은 버마에서 평화시위에 참가한 죄로 59년형을 받았으며 다른 학생들 역시 14년에서 38년에 이르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NLD 한국지부 동료인 Yan Naing Htun은 1999년 3월 경찰에 붙잡혀 강제 송환되었으나 운 좋게도 태국에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제 송환에 대한 공포는 저희 동료인 Kyaw Swa Linn이 2000년 3월에 체포되어 한국정부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을 때 더욱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을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 살아야했으며 그 때가 한국에서 지내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나와우리, 부천 이주노동자의 집, 그리고 민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저희들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였고 법무부에 난민지위 신청을 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우리들이 왜 난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난민신청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들과의 솔한 토론과 본부와의 상담을 통해 NLD 한국지부 회원들이 난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2000년 4월 난민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변의 박찬운 변호사님과 부천 이주노동자의 집의 이란주씨가 2000년 3월 16일 저희들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여 지원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법무부 직원과 수 차례의 인터뷰를 했고 법무부에서 원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00년 5월 저희들의 난민지위 결정에 관해 좀더 조사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2002년 6월 19일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법무부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기에 고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2000년 7월에는 NLD 한국지부의 1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제 네트워크, 이화여대, 부산 동아대, 성공회대,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협회, 2001 광주 인권 문화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제3회 5.18 기념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여 버마의 인권상황을 아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은 나와우리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성원을 받아 두 차례의 로비를 통해 버마명명정부, 버마명명의회, NLD(자유지역) 본부, 버마노조연합 등 NLD 지도자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는 김민석, 이재정, 이미경, 황우여 의원과, 인권대사 박경서, 민노당 총재 권영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회 박찬운,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나와우리 김현아, 아태민주지도자포럼 Euiquan Pul Chang, 민주노총 박문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회장 이주영씨 등 각계 각층의 솔한 인사들을 만나 버마의 상황을 설명하고 버마의 정치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여행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저희는 지역 혹은 국제회의에 참가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지역회의 및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 참여하는 일은 저희의 정치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의 발전과 사회변화, 민주화 투쟁의 경험, 현 한국 민주화와 인권 현황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 고국에 돌아가 버마의 재건을 꾀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정부나 다른 사회단체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희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저의 경험과 한국사회를 바탕으로 책이나 보고서를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지에 관해 어떠한 조언이나 협조를 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버마의 정세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고국에 돌아가겠노라고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는 고국을 재건하는



그 날까지 저희들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또한 NLD 한국지부 회원들이 난민지위신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저희 NLD 한국지부 회원들은 가까운 장래에 버마와 한국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정부가 저희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한국이 OECE 회원국이라고는 하나, 난민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리더가 되려면 국제 난민 문제에 더욱 관심과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2년 5월 6일 오전 아웅산 수지여사가 19개월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웅산 수지 여사는 NLD의 총재일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자격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연합과 한국정부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의 수반들과 외무장관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아웅산 수지여사의 연금해제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비록 아웅산 수지여사의 가택연금해제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NLD와 다른 정치 정당 그리고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버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큰 기회를 열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은 군부와 NLD간의 신뢰구축 노력이 그 결실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는 군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간에 즉각 실질적인 정치회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정치적 양심수들이 무조건적으로 풀려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석방 속도가 더디지만, 인권적 발로에 의한 석방은 정치상황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버마는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가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원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버마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NLD가 82%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1990년 5월 27일 총선의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2. 버마의 현 정치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NLD와 군부간의 회담과정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3. 정치적 양심수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군부에 압박해야 합니다.
4.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버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군부와의 어떠한 협조나 불법적인 정권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It's my great pleasure to share my opinions concerning with our asylum status on the 2nd Anniversary of the World Refugee Day Commemorative Workshop. I passed my high school in 1986 and then I joined the Rangoon University as a student of Psychology. I took part actively in the student movements in 1987 and also early 1988 movements in our university. When the Burmese government shut down all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Burma in the month of Jun, 1988, I had to go back to my home town. I led the peaceful mass demonstration in Einme township during the 1988 General Uprising, one of the most remarkable people's movements in modern history. All the Burmese people demanded the abolishment of the one party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multi-party democratic system, and also called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need.



I participated the 8888 General Uprising, as the chairperson of Einme Township Students Union as well as the general secretary of Einme Township demonstration committee. As the results of that, I was detained for 45 days at the township police station after the military coup in September 1988. There were many student activists in Einme township, but I was the only detainee. When I was released from jail, I formed the Democratic Party for New Society(DPNS). I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DPNS Einme township until I went back to my university.

Secret police always watched my activities and often warned me not to do anymore democratic movements at the university student life. During those days, Burma was like a battlefield where human rights were constantly abused and a battlefield was not necessarily a place where people were shooting at each other. In a society, where basic human rights were ignored, where the rights of the people were violated every day. After I got BA. Psychology in 1993, I had to discuss with my parents about my future. They do understood that I am political animal and I would never give up my belief. After our several discussion, we decided that I should go abroad instead of staying in prison. The name of Kim Dae Jung and Gwangju General Uprising did persuade me to choose Korea as the most suitable country in the world. Burmese military government thinks that letting young activists go abroad is better than their staying inside Burma. Therefore, they didn't disturb me anymore while I was preparing to leave for Burma. Finally, I got to Korea safely in 1994 as the technical trainee.

We formed the NLD(LA) Korea Branch to continue trying utmost to resto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Burma for the best of the people, since late 1998, NLD(LA) Headquarter gave the mandate to carry on on behalf of them. As soon as we formed NLD Korea Branch, we joined student un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lso Nawauri. Buchon Migrant Workers House also supported us whatever we needed at that time. We celebrated a lot of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We held the press conference and visited human rights NGOs to explain current Burma's situation. We attended New NGOs Strategy for Democratization of Burma, East Timor Conference which were held by FDL-AP(The Forum of Democratic Leaders in the Asia-Pacific) as well as the 1999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during the year of 1999 and 2000. Whenever we held the demonstration, the officers of the Myanmar Embassy always took the video and also the photos of us to report our activities to their government. We had to do our best for our country as illegal foreign workers in Korea because our visas have been already expired. If we had been arrested by the immigration or police officials and deported back to Burma, We would have faced political persecution and sentenced to at least 20 years in prison for our democratic activities. One of my close friends, Thet Win Aung was sentenced 59 years in jail while other students activists received prison terms from 14 years to 38 years for participation in peaceful protests in Burma. Yan Naing Htun, one of my colleagues for NLD Korea Branch was caught by police officers and sent back to Burma in the month of March, 1999. But he luckily had the chance to land down in Thailand. Our fear of deportation came one step closer to reality when one of our colleagues, Kyaw Swa Linn, also a member of the NLD Korea Branch was detained by the Korean Authorities in the month of March, 2000. We had to live in constant fear of being deported and we felt that it was the most dangerous period in Korea at that



time.

The Korean people from Nawauri, Buchon Migrant Workers House and Minbyun, who support our NLD, Korea Branch, concerned highly of our safety and suggested us to seek asylum at the Ministry of Justice. I sincerely admit that we didn't want to apply it at first because we are not the refugees and also we have our own mother-land. We debated each other within our party whether to apply refugee status or not. We discussed with our leaders from NLD(headquarter) about our situation. They also urged us to apply legal status as the members of NLD(LA) Korea Branch. That was why we finally went to the UNHCR office to apply for refugee status in the month of April, 2000. Attorney Park Chan-Un from Minbyun and Sister Yi Ran-Joo from Buchon Migrant Workers House accompanied us and supported when we submitted our applications at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on May 16, 2000. We were interviewed by the officials of MOJ for several times and gave them whatever they asked our documents pap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May 2000, announced that it would screen Burmese asylum seekers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us refugee status. However, we are supposed to be still under screening procedures until today, Jun 19 of 2002.

Anyway, we could not waist our precious time by just waiting for the news form MOJ. We, the members of NLD Korea Branch went ahead to accelerate our struggle for our beloved country. We could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Conference of NLD(LA) Korea Branch successfully in the month of July, 2000. Accordance to their invitation, we got to the Korea International Network, Iwha Women's University, Dong-A University(Pusan), Sungkonghoe University,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2001 Gwangju Human Rights Cultural Festival, the 3rd 5.18 Memorial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2002), and explained about current Burma's situation. We invited our leaders from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National Council of Union of Burma, NLD(Liberated Area) Headquarter, Federation of Trade Unions Burma and greatly arranged two lobby trips to Korea with kind support of Nawauri and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also ICEM. During those lobby trips, we had the chance to meet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uch as Mr. Kim Min-Seok, Mr. Lee Jae-Joung, Ms. Lee Mi-Kyung, Mr. Hwang Woo-Yea, Mr Park Kyung-Seo(Ambassador for Human Rights), Mr. Kwon Young-Ghil, (President of Democratic Labour Party), Mr Park Chan-Un(Chairperson of Committee Legal Aid for Refugees), Mr. Suh Joon-Shik(Director of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im Hyun-A, (President of Nawauri), Mr. Euikwan Pul Chang(Executive Director from the forum of Democratic Leaders in the Asia Pacific), Mr. Park Moon-Jin(Vic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Ms. Lee Ju-Young(Head of Campaign team from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and explained about current Burma's situation and sought international support for a political settlement in Burma.

If we have the travel documents, we could attend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well as regional meetings to discuss about strategies for democratization of Burma. I dare to say that it is very important need for us. We also would like to study about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Korea,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struggle in Korea and as well as Korea's current democracy and human rights situations. We are very interested in those issues and it would be very useful when we rebuild



our country. It would be very grateful if the Korean government and also Korean society arrange as the above programmes which enable to more understand about Korea. As for me, I am preparing to write down a book or report which based on my experience in Korea and also about Korean Society. Therefore, I warmly welcome to share your advices or cooperations concerning with my willingness.

I sincerely would like to declare that we would go back to our beloved mother-land if we could have changed the democratic atmosphere inside Burma. We never intend to settle in Korea forever. We also must carry on the duties when we reconstruct our own land. And I also think that this will be the first and last time that members of NLD seek asylum at Korean government. We, the member of NLD Korea Branch would be the best diplomats who could enhance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Burma and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It would be beneficial for both sides if the Korea government grant us as legal status holder. Even though South Korea is a member of OECD countries, it's still developing country concerning with Refugee issue. I do believe that Korea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refugee issues if they want to be the leader of Asian countries.

Let me say that we are too delighted to know about the release of Daw Aung San Suu Kyi after 19 months of under house arrest on the morning of 6 May, 2002. As you know, Daw Aung San Suu Kyi is not only the General Secretary of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but also our national leader. She is also one of Noble Peace Laureates as Mr. Kim Dae Jung. We are also profoundly honored and pleased to note that heads of states and foreign ministers from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Republic of Korea and the media - publications,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have been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the release of Daw Aung San Suu Kyi.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release of Daw Aung San Suu Kyi cannot be considered as a democratic victory, it nevertheless has opened up opportunities for the NLD as well as other political parties, the nation, and the people (including ethnic nationalities) to take further steps toward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release of Daw Aung San Suu Kyi is an indication that the confidence-building phase between the NLD and the authorities has been completed. To go beyond that phase, steps should be taken for the immediate holding of substantive political talks. It is most important that all political prisoner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unconditionally. At the present moment the pace of releases is slow.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on humanitarian grounds will improve political conditions.

I do admit that we do need the support and sympathy of countries who have had tremendous experience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like South Korea. Now South Korea i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r Kim Dae Jung, who won Noble Peace Prize in 2000. Therefore, we sincerely and urgently appeal the Korea government and also Korean people to support the Burmese democratic movements as following:

- (1) To recognize the result of 1990 May 27 General Election which NLD won the landslide victory with over 82% of the vote.
- (2) To pay special attention to current political developments inside Burma and closely monitor the dialogue process between NLD and military regime.



(3) To pressure Burmese military government to release all of the remaining political prisoners as quickly as possible.

(4) To refrain any cooperation or coordination with the military government in Burma, which would enhance, support or sustain their illegal rule, in order that the people of Burma would be supported and encouraged towards their endeavors for a democratic Burma.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Burma.



##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변 국제연대 간사 김기연

### I. 머리말

지난 겨울 한 인권관련 국제워크숍에서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던 기억이 난다. 태국에 살고 있는 버마출신 난민여성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는데 한 일본인 참가자는 일본정부가 2000년 한 해동안 인정한 난민의 수가 22명뿐이고 인도적 지위를 받은 숫자까지 합해도 고작 백여 명이 안된다고 일본정부의 행동에 대해 정말 부끄럽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인색한 난민정책을 펴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매우 경악스러워 하고 있었다. 지난 8년간 한국은 단 한 명만의 난민을 인정했다는 말을 차마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워 필자는 준비해 간 자료를 회의장 외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씩씩하게 회의장을 나섰던 기억이 있다.

물론 난민인정을 자체만으로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주장한대로 난민신청인 대부분은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인정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난민인정제도와 관행에 내재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볼 때, 관련기관이 난민지위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인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관련법제 개선 및 4개국어로 된 난민신청안내서 발행 등 몇 가지 긍정적인 시도와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과 관행상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어 난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난민정책의 주요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한국의 난민인정신청 현황

한국정부는 지난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51), 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67), 이하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1993년 12월 10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1)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각 1조에 따라 난민의 일반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4년 6월 30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인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이로부터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이 시작되었다.

1994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한국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인 총 135명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단 한 명<sup>2)</sup>뿐이다. 2001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26.3%(인도적 지위 포함)의 난민신청인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정부의 난민인정율은 극히 낮은 것이다. 인정율 26.3%  
17%

한편,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인정을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인의 숫자 자체도 매우 적은 편이다. 법무부는 한국의 경우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난민신청인 대부분이 이러한 입국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장기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증발급이 엄격한 일본의 경우도 한 해 200명 이상의 난민신청이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한국은 난민신청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표1> 연도별 난민인정신청현황(2002년 4월 현재,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신청	135	5	2	4	12	26	4	48	32	2
허가	1								1	
불허	45	4	1	1	8	26	1		4	
철회	27	1	1	3	4			8	9	1
심사중	62						3	40	18	1

<표2> 2001년 주요국가의 난민인정 현황(인도적 지위 포함)<sup>3)</sup>

국가명	영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태리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인정수(명)	38,615	1,157	5,097	26,102	2,666	28,304	4,464	93	1
인정율(%)	24	21	45	24	20	25	24	18	6

17건중

### III.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

#### 1. 난민인정 신청절차

##### 1) 신청기한 등 신청기준의 임의적 적용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항에 따르면 난민인정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 연합뉴스(2001년 2월 14일), '에디오피아인 사상 첫 난민인정(종합)' 참조

3) "2001 UNHCR Population statistics(Provisional)" 중 [Table 15. Individual asylum application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country of asylum and level in the procedure, 2001]에서 발췌 정리. 자세한 내용은 UNHCR 웹페이지 (<http://www.unhcr.ch/cgi-bin/texis/vtx/home?page=statistics>) 참조. 인정율(%)= 인정 건수/ 당해 종결사건 수



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의 기간을 넘긴 뒤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되기 전까지 본 조항은 일명 '60일 규정'이라 하여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60일 규정은 난민신청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한국의 법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에 출두하여 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며, 단순히 그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난민신청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sup>4)</sup> 특히 난민신청접수의 창구가 되는 각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은, 현지에서—즉 한국에 있는 동안 난민이 된 자에 대한 고려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상륙 또는 입국 후 60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만으로 난민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신청기간을 초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난민인정의 주체인 법무부장관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여 난민신청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sup>5)</sup>을 내린 바 있다. 신청기한이 60일에서 1년으로 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1년 기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1년 기한을 이유로 난민신청인의 신청서 자체가 반려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난민신청절차의 불투명성

난민인정과 관련하여 접수 및 면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업무상의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항 출입국관리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난민신청인들은 우선 UN난민고등판무관실(UHCR) 서울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UNHCR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신청을 하도록 조언한다. 그러나 UNHCR 사무소 또는 민간단체에 난민신청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힌 외국인들이 관할 출입국관리소를 몇 차례씩 방문하고 난 뒤에도 난민신청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은 난민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신청서를 배부하고 본인이 이를 작성하도록 한 뒤 면담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교부 및 작성보다 면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린 듯하다.

난민신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면담 과정에서 난민신청 자체를 직·간접적으로 만류하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 난민신청인은 담당 출입국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난민신청신청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렵도 없으니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sup>6)</sup> 제3국행 권유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난민신청인으로 하여금

4) 박찬운(2000), "한국의 난민정책: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인권과 정의, 제286호, 대한변호사협회, 97쪽

5) 2001년 6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사건 2000구3893, 난민신청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6) 이러한 제3국행 종용은 난민신청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신청이 접수된 난민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한 난민신청인은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도울테니 난민신청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2000년 12월 20일자), "한국에 오겠다는 난민 있으면 말리겠다" 참조



국적국의 대사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케 하여 여권을 다시 발급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다. 한 난민신청인은 담당 출입국 공무원과의 면담 도중, 직접 국적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비호신청인에게 비호를 인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인정 신청의사가 있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제3국으로 가거나 제3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회유, 설득하는 것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책임을 분담하려는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를 꺾는 행위이다.

## 2 난민인정의 심사

### 1) 전문 통역인의 부재

지난 해 10월 강제출국 조치된 한 이란인의 자술서 오역 소동<sup>8)</sup>은 난민인정심사에 있어 통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난민인정절차에서 신청인들의 구두진술만큼 중요한 증거는 없다. 즉 난민인정신청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난민인정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 통역인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9)10)</sup>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비영어권 출신이므로 전문 통역인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이란인 자술서 오역 소동 이후 법무부에서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1년 통역비 예산은 760만원으로 특수외국어소요액 1억 여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난민신청인 대부분의 불만은 자신의 의사가 한국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난민신청인은 면담과정에서 불어통역이 계속 준비되지 않아 스스로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러시아가 모국어인 난민신청인의 경우에도 통역이 없어 난민신청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친구를 동반해야 했다. 법무부는 '통역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sup>11)</sup>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난민신청인의 경우 친구를 대동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측은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난민신청인의 경우 통역을 위해 대동한 친구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며 진행되었던 면담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통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되는 문제는 법무부 측의 통역관 선정에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무릇 난민신청인은 자신의 국적국에서 박해의 위협을 피해온 사람이거나 돌아갈 경우 박해의 두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법무부에서 통역관을 선정함에 있어 난민신청인의 국적국 출신인은 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의 통역관 선정은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난민신청인의 국적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통역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

7) UNHCR 집행위원회(EXCOM) 결정 제15호, 1979, (a)항

8) 동아일보(2001년 11월 7일자), "이번엔 법무부 국제망신" 참조

9) 박찬운(2001), "한국의 난민인정정책과 실무,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82쪽

10) UNHCR,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191 (iv) 항: 신청인은, 관계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유능한 통역관의 조력을 받을 것을 포함한 필요한 편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11) 법무부(2001), 「난민인정업무처리편람」, 17쪽

<표3> 국적별 난민인정신청현황(2002년 4월 현재,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신청	허가	불허	신청철회	심사중
계	135	1	45	27	62
알제리	18		14	4	
이란	13		8		5
콩고민주공화국	26		5	8	13
아프가니스탄	8		5		3
라이베리아	5		3	1	1
파키스탄	10		4		6
이라크	5		2		3
나이지리아	2			2	
에디오피아	4	1	1		2
소말리아	4			1	3
중국	4		1	3	
카메룬	5				5
미얀마	21			4	17
르완다	2				2
기타	8		2	4	2

## 2) 심사기간의 장기화

현재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또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의신청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심사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한국의 경우 심사기간의 장기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난민신청인들에게 제공되는 물적 지원 및 정책적 조치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심사기간동안 난민신청들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사회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sup>12)</sup> 난민인정 심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노동(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기는 하지만,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인식될 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난민신청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법무부나 UNHCR 사무소와의 잦은 면담을 묵과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마저 잃는 경우가 많다. 의료문제의 경우에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민신청인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난민신청인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이라기 보다, 아무런 기약 없이 지나간 심사기간 동안 그저 법무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다. 실제로 몇몇 난민신청인들(특히 여성)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국적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만큼이나 한국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UNHCR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한국정부가 심사를 끝낸 난민신청사건은 총 17건뿐이다.<sup>13)</sup> 2002년 4월 현재 심사 중인 사건이 62건임을 감안할 때 이미 1-2년을 기다린 난민신청인들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12) 장복희&김기연, "인종차별의 시각에서 본 난민의 인권", 서울국제법연구, 제8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53쪽

13) [Table 15. Individual asylum application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country of asylum and level in the procedure, 2001], "2001 UNHCR Population statistics(Provisional)", 5쪽



### 3) 과도한 입증책임

<그림 1> 인권하루소식(2001년 11월 9일자) 만화사랑방



지난해 4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4)</sup> 물론 신청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은 종종 서류나 다른 증거로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신청인이 자신의 진술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의 경우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박해를 피해 피난해 온 자는 거의 맨손으로 최소한의 필수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도착하고 신분증명서도 갖지 못하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간

에 분담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해야 한다.<sup>15)</sup> 난민신청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법무부가 발행한 난민인정업무처리편람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sup>16)</sup> 그러나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처리편람은 난민인정 불허대상을 설명하는 항목에서는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가할 때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sup>17)</sup> 이 대목은 만약 난민신청인이 일반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고문과 가혹행위, 중대한 인권침해가 만연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밝힌 난민인정불허처분 사유의 주요 요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당 난민신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난민신청인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거의 요건만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협약난민 단 한 명만을 인정한 인권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14)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E/C. 12/1/Add.59) 30항 참조

15) UNHCR,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196항

16) 법무부(2001), 전게서, 8쪽

17) 법무부(2001), 전게서, 18쪽



#### 4) 난민인정관련 기관의 비전문성

##### ① 보호대상이라는 인식부족

현재 국내에서 난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이며, 난민신청인과 직접 대면하여 접수와 면담, 사실조사 등을 진행하는 일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난민인정절차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난민문제가 단순한 출입국관리 차원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8)</sup> 즉 출입국관리국은 난민신청인 또는 난민을 인권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출입국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난민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원 비공개원칙 무시<sup>19)</sup>, 난민신청인 구금 등이라 할 수 있겠다. 난민신청인에 대한 구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외국인을 신원입증,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하는 경우, 둘째,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이다. UNHCR 집행위원회(EXCOM) 결정 제44호(1986)에 따르면, 난민 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이러한 구금은 반드시 사법심사 또는 행정심사를 받아야 하며, 보통범죄인으로서 감금해서는 안되고, 구금된 난민은 UNHCR 또는 민간단체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난민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간혹 발생하는 경우 구금에 관한 국제법적·국내법적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에 대한 난민관련 교육부족과 난민신청인만을 위한 수용시설의 부재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sup>20)</sup>

##### ②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2항에서 8항은 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난민인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sup>21)</sup>와 실무협의회<sup>22)</sup>는 난민의 인정 및 보호, 이의신청, 난민의 정책지원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난민인정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인권법적 시각이 부족하

18) 박찬운(2001), 전계논문, 82쪽

19) 지난해 2월 첫 난민인정 결정이 있을 후, 법무부는 난민인정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먼저 난민 개인의 신상을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난민이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은신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된 기쁨보다 언론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어 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수난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내내 눈물을 흘려야 했고, 후에 한국 내에 있는 자국민들의 협박을 받아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일까지 발생한 일이다. 한겨레신문(2001년 2월 15일자), "난민신원공개 신중히" 참조

20) 참고로 UNHCR은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인 또는 난민에 대한 구금은 없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난민은 해당국 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지정거소에 주거하며 정기적으로 관련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 신원보증인 확보, 보석 제도, 외출이 가능한 전문 수용시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Kate Jastram & Marilyn Achiron(2001), 「Refugee Protection: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Law」, UNHCR & Inter Parliamentary Union, Geneva, pp.83-85 참조)

21)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2002년 6월 이전): 법무부 차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관계국장 및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22) 난민인정실무협의회의 구성(2002년 6월 이전): 출입국관리국장(위원장), 법무부 인권과장, 법무부 입국심사과장, 법무부 체류심사과장, 국가정보원 외사조정과장,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장,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경찰청 외사1과장, 대한적십자사 국제협력팀장



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협의회 또는 실무협회가 실질적인 협의체라기 보다는 관련문서의 회람 또는 의견요청 등 수동적으로만 운용되어왔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한국제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전문가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개선의 시도가 있어 난민인정에 있어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5) 동일한 이의신청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4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1차 심사 기관과 이의신청 심사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거부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과정을 통해 그 결정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이의신청은 하나의 행정심판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차 심사 기관과는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이의신청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sup>23)</sup>

### IV.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1. 전담 부서의 인력 확충

전술한 바 있듯이 난민인정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난민인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예를 들어 신청기한의 요건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와 제3국행 설득— 등도 인정절차를 진행할 담당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신청전수만 늘어난다는 부담이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신청인 당사자에게 있어서 생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면담 및 사실 조사는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전담 부서의 공무원이 난민인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제대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확충과 교육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련 예산의 확대 특히 통역예산이 확대되어 난민신청인과 면담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인도적 지위부여의 제도화

난민을 정의함에 있어, '전쟁 또는 폭력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여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국제적 보호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난민협약은 1951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난민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재의 필요를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난민협약 상의 난민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협약난민의 인정을 확대하고 이들이 난민협약 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한국 난민 정책의 현실 상 아직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대안은 보충적 형태의 보호

23) 박찬운(2000), 전계논문, 98쪽; 장복희&김기연, 전계논문, 252쪽 참조



(Complementary protection)를 제도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즉 난민협약 상의 정의에는 엄격히 들어맞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를 부여하여 최소한 국내에서 잠정적으로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sup>24)</sup> 최근 법무부는 이미 오래 전에 난민인정불허결정이 내려졌던 쿠르드인 두 명에 대해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시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라크 정부의 쿠르드인에 대한 탄압정책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련당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청원서를 제출해 왔던 한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결정은 비록 인도적 지위부여라는 표제를 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인도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 보여지며, 앞으로 '인도적 지위'라는 제3의 범주를 제도화시켜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된다.

### 3. 난민신청인 및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

지난 해 4월에 있었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인들 대부분이 취업한 상태이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차원의 보조금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난민신청인들의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난민신청인 대부분은 소규모 공장 등에 임시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는 난민신청인들이 처한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대한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물적·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나아가 난민신청인을 위한 전문적인 수용시설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sup>25)</sup> 한편, 지난 해 2월 협약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아프리카인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체류자격(F-1)<sup>26)</sup>은 부여받았지만 인정결정이 있는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및 복지 혜택이나 교육제공, 보조금 지급 등 정착을 위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금계좌  
입금방법

→ 무상과

### 4. 인권교육의 확대

한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 등을 암기하도록 교육받지만 유럽의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을 암기하도록 교육받는다<sup>27)</sup>고 한다.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세계인권선언 제14조—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의 의미를 이해하

24) 일본의 경우 2001년 한 해 24명이 협약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 67명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25) 참고로, 독일, 벨기에 등의 경우 난민신청인에 대해 대부분 취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보조금과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난민신청인들이 심사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난민전문 수용시설이 있어 가족단위의 난민신청인이나 당장 머물 곳이 없는 난민신청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기관이 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26) 2002년 4월 18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F-2(거주)를 받도록 되어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대로라면 F-2(거주)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F-5(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법률에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법적 지위나 체류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겠다.



며 자라났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난민정책의 문제점들은 좀 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난민문제를 머나먼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기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얘기로만 생각한다. 난민관련 문제를 보도해 주도록 언론사 등에 요청할 때마다, 난민신청인들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주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난민이란 누구이며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할 때 인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곤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sup>27)</sup> 한국의 난민정책은 우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권적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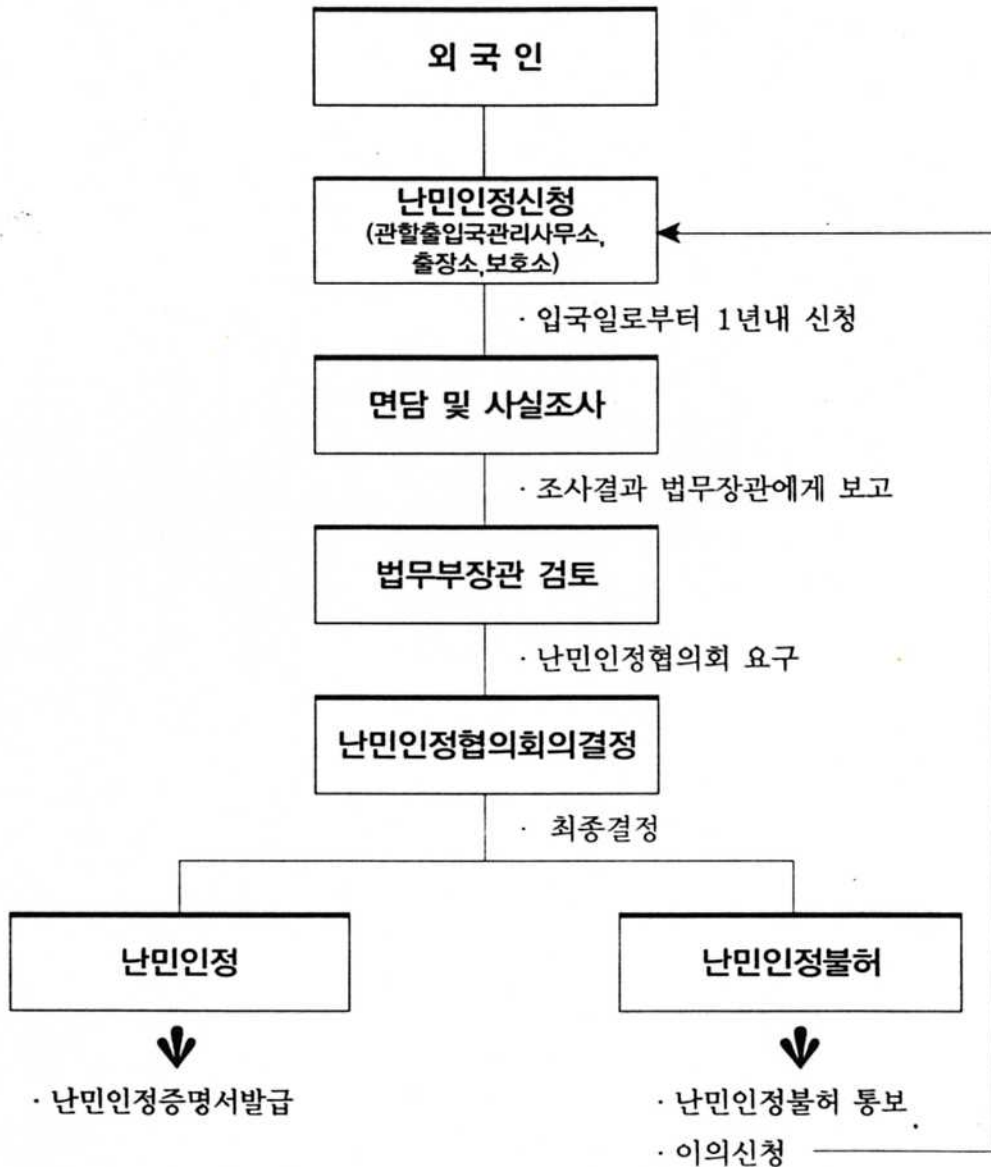
#### IV. 맺음말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월드컵 경기로 온 세계가 들떠 있지만 그 어느 한 켠에는 박해와 폭력을 피해 떠도는 2천만명의 난민들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수난과 고통을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난민들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한국사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7) 특히 한국의 난민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외국인보호소 내의 처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에는 난민신청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있는 경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므로 보호소 내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한국의 난민정책과 관계법령, 관행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관련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난민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난민인정정책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많은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난민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제출권을 활용하여 난민의 인권보호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 난민인정처리절차 도해 |



28) 법무부 출입국관리국(2002), 『난민인정절차』, 6쪽